

[서식 예]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- 원 고 OO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서울특별시 ◇◇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가 2000. O. O.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)영업허가를 받아 그무렵부터 서울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의 ○ 소재 건물 2층에서 "◎◎◎"라는 상호로 커피, 맥주, 칵테일 등 음료수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.

나. 피고는, 원고가 19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위 음식점에서 유흥종사원인 ◆◆ ●를 고용하여 허가없이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,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1항 제13호, 제44조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[별표 17]을 적용하여,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



니다.

2. 처분의 위법성

가. 위 ◆◆◆는 이 사건 적발 당일인 19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부터 ○○:○○ 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△△△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약 2시간 여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후 △△△에게 술값 58,000원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10,000원을 추가하여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.

나. 위와 같이 ◆◆◆↑가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시중을 들고, 그대가로 봉사료를 요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

다. 그러나,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·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.

라. 위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◆◆◆의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진 잘 못은 인정되나, 위 음식점은 약 24평의 공간에 테이블 10개, 의자 40개를 설치하여 커피, 맥주, 칵테일 등 주류와 음료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, 실내에는 악기 연주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, 칸막이나 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업태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, 원고가 보증금 2,000만원 및 월 임대료 7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, 영업정지기간 동안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 및 생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 음식점을 개설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정도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

3. 결 론

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영업정지명령서

1. 갑 제2호증 영업소 내부사진

첨부서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행정법원 귀중

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제소기간 | ※ 아래(2) 참조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청 구 인 | 피처분자 | 피청구인 |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|
| 제출부수 |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| 관련법규 | 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 |
| 비 용 | 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| | |
| 불복방법 및 기 간 | 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| | |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